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공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 확보 의무화 》

■ 이연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13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이 연 회 의 원 안(제221721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공공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 확보 의무화 (안 제49조제6항 신설)	3

I. 이연회의원안(제2217213호)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연회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 2026. 3. 4.
3. 회 부 일 : 2026. 3.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건축된 건물인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공공건축물 옥상에 이동통신설비 설치 공간 확보 의무화 (안 제4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u> <u>1.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u> <u>2.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u>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설비 설치공간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①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②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건축법」¹⁾에서는 화재·침수 등 재난 방지 및 재실자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²⁾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해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및 거치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1)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사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이하 생략)

제안이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시공된 건물이 아니어서, 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옥상 방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설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동통신설비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동통신시설 설치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재난 등 특수상황 시 인명·재산 피해 확대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는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 안전·위생 등을 규정하는 조문으로서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다소 이질적인 측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동 내용의 별도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49조제6항제2호는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치대”의 의미와 설치 기준에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동통신설비를 고정·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설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기지국, 안테나 등의 이동통신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필요에 의해 개별 건축물에 설치되는데,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에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5